

심판위원회 운영 규정

제 정 : 2010. 10. 1.

개 정 : 2016. 9. 27.

개 정 : 2020. 10. 14.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설치 및 명칭) 대한장애인럭비협회(이사 “장애인럭비협회”라 한다.) 정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.<개정 2020. 9. 16.>

제3조 (적용범위) 위원회는 장애인럭비협회 등록심판으로 제6조 제2항의 자격자에 적용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제4조(제정의무) ① 장애인럭비협회는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 후 대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)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<신설 2020. 10. 14.>

제5조 (기능) 위원회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20. 10. 14.>

1.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
2. 심판의 권익 보호·증진에 관한 사항
3. 심판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
4. <삭제 2020. 10. 14.>
5. 장애인럭비협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 9. 27.>
6.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

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

제6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2인 이내<개정 2020. 10. 14.>
3.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 <개정 2020. 10. 14.>

② 제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1. 장애인력비협회 등록심판으로서, 최근 3년 내 장애인력비협회가 주최·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<개정 2020. 10. 14.>

③ 장애인력비협회 정관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장애인력비협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0. 10. 14.>

제7조(위원 선임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력비협회에 등록된 심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② 위원은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사무국에 보고한다. <개정 2020. 10. 14.>

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 부위원장을 2인 선임할 경우 순서를 정해야 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⑤ 위원장 선거에 관한 투표인단의 구성방법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제8조(장애인력비협회장 선거인 선출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1. 위원회위원장 <개정 2020. 10. 14.>

2.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명

② 제1항의 선거인은 장애인력비협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,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. <개정 2020. 10. 14.>

제9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10조(임기) ① 위원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14.>

②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력비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장애인력비협회 정관 제23조(회장의 선출)제2항 및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(선거인)제1항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전이라도 이 규정 제8조(장애인력비협회선거인)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. <개정 2020. 10. 14.>

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①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9. 27.> <개정 2020. 10. 14.>

1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개정 2020. 10. 14.>

2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개정 2020. 10. 14.>
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<개정 2020. 10. 14.>

4.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<개정 2020. 10. 14.>

5.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심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
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해촉 된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2. 해당종목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<개정 2020. 10. 14.>

3. 제6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이후 해당될 경우 <개정 2020. 10. 14.>

제12조(회의소집) 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력비협회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. <개정 2020. 10. 14.>

제13조(의결정족수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제14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0. 14.>

제14조(긴급한 업무처리) <삭제 2020. 10. 14.>

제15조(제척 및 회피) ①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0. 14.>

제 3장 심판 양성 교육

제16조(교육실시)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하며,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, 강습회,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,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, 경기규칙, 판정의 이론, 실기 교육 등 당해 장애인력비협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심판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판의 도덕성 함양과 관련 교육은 필수 교육으로 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14.>

③ 장애인력비협회는 교육종료 후 반드시 이수증(수료증)을 발급해야하고 발급대장을 관리·운영해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14.>

제 4장 심판평가제

제17조(심판평가)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② 장애인력비협회는 상임심판, 장애인력비협회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장애인력비협회 심판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③ 장애인력비협회는 장애인력비협회 실정에 맞게 평가지표 등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.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,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. <개정 2020. 10. 14.>

제 5장 심판배정

제18조(심판기피 및 제척)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,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, 지도자의 친인척,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제19조(심판배정)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장애인력비협회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14.>

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(팀)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.

제20조(심판판정) ①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.

②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, 장애인력비협회 양식에 따

라 경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③ 장애인력비협회는 전국규모대회(국내종합대회 포함) 요강에 비디오 재 판독 요청 시 판독 및 비디오의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관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 10. 14.>

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장애인력비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0. 10. 14.>

제21조(심판의 품위) ① 심판은 장애인력비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.

② 심판은 장애인력비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④ 심판은 장애인력비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장애인력비협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법제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(문책)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14.>

⑥ 심판은 선수·지도자의 팀(단체 등) 입단,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,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 6 장 상 별

제22조(심판의 상벌)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장애인력비협회 법제·상벌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<개정 2020. 10. 14.>

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,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.

③ 위 제1항에 의거 장애인력비협회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장애인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장애인력비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심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3조(심판의 포상)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여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장애인력비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장애인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4조(심판자격 상실 및 복권) <삭제 2020. 10. 14.>

제 7 장 심 판 매 뉴 얼

제24조(심판매뉴얼) 장애인력비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<개정 2020. 10. 14.>

부 칙 (10. 10. 1.)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2010. 10. 1.>

부 칙 (12. 2. 25.)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2012. 2. 25>

부 칙 (13. 4. 2.)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일부 승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. <2013. 3. 27.>

부 칙(16. 2. 24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2016. 2. 24.>

제 2 조(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. <전면개정 2016. 2. 24.>

부 칙(16. 9. 27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 <2016. 9. 27.>

부 칙(18. 3. 28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 <2018. 3. 28.>

제 2 조(자격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26조 표-1 급수별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기존의 3급 자격소지자중 보수교육을 받은자는 기록심판 1급으로 하며, 그 외는 기록심판 2급으로 한다. 또한 기록심판의 1급과 2급은 심판양성의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. <개정 2018. 3. 28.>

부 칙(20. 10. 1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<2020. 10. 14.>

<표-1> 급수별 운영 현황

급수	자격 조건	활동 범위
International Referee	1.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계선수권대회 및 패럴림픽 참가
Zonal International Referee	1.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대회 • IWRF에서 승인한 대회 • 장애인아시아경기 대회
Rookie	1. 위원회에서 추천 자중 국제연맹에서 자격이 되는 자	
심판 1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판 2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 20경기 이상을 참가하여 이론시험 80% 이상과 체력테스트 통과한 자. 2. 휠체어럭비 국제심판 Zonal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. 3. 심판 2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 5회 이상의 심판 강습회 경력이 있는 자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 대회 심판 활동 • 국제심판 응시 자격 부여 • 심판 강사 교육
심판 2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록심판 2급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10경기 이상을 참가하여 보수 교육 후 이론시험 80% 이상과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자. 2. 기록심판 1급 소지자로 심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론시험 80% 이상과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자. 3. 기타 유사 심판 자격 소지자로 심판위원장의 추천을 얻어 이론시험 80% 이상과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 대회 심판 활동 • 국제심판 응시 자격 부여 • 국내 기록심판 자격 교육 강사 자격 부여
기록심판 1급	1. 기록심판 2급 소지자로 1년 이상 10경기 이상을 참가하여 보수교육 후 이론시험 80% 이상을 득한 자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회 기록심판관리의 역할 수행
기록심판 2급	1. 장애인럭비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심판 강습회를 참가하여 10시간 이상 교육 후 이론시험 70% 이상을 득한 자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 대회 기록심판 활동